

第234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3 號

國會事務處

2002年11月7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13次本會議)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5.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6.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7.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關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8.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9.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0.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
11.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12.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13.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14.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15.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16. 國際租稅調整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7. 關稅법중개정법률안
18.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
19.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20.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21. 국고금관리법안
22.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23.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
24.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
25.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26.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案
27. 兵役法中改正法律案
28.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29.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30.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31.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32.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33.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關한법률안

35.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36. 畜産法中改正法律案
37.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안
39.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0. 山林組合法中改正法律案
41. 산지관리법안
42. 農地法中改正法律案
43. 農藥管理法中改正法律案
44. 開港秩序法中改正法律案
45. 海運法中改正法律案
46. 海上交通安全法中改正法律案
47.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48. 騒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
49. 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 처리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50.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51.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
52.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53.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54.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
55.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
56. 建設勤勞者の雇傭改善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57.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代案)
58. 都市開發法中改正法律案
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60. 骨材採取法中改正法律案
61. 賃貸住宅法中改正法律案(代案)
62.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3.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64. 法律第3782號河川法中改正法律附則第2條의規定에 의 한補償請求權의消滅時效가만료된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 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65. 河川法中改正法律案
66. 女性發展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67.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生活安定支援法中改正法律案
68. 2003년도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 대한국가보증동의안
69. 2003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국가보증동의안
7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 대한출연동의안
7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
72.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과견연장동의안
73.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
74.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
75.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

76.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

附議된案件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5. 刑의失効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6.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7
7.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關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7
8.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무위원장 제출)	8
9.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임태희·김정숙·박세환·안택수·윤영탁·김영선·오세훈·이승철·심재철·윤한도·김문수·김만제·엄호성·임진출·전용원·정형근·김부겸·김덕룡·박주천·이병석 의원 발의)	8
10.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정부 제출)	8
11.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나오연 의원 대표발의)(나오연·김동욱·박종근·서정화·손학규·안택수·이상득·이한구·임태희·정의화·최돈웅·홍준표 의원 발의)	9
12.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13.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14.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0
15.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0
16. 國際租稅調整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0
17. 관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8.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정부 제출)	12
19.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2
20.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2
21. 국고금관리법안(정부 제출)	12
22.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2
23.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2
24.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국방위원장 제출)	14
25.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
26.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
27. 兵役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
28.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송영진 의원 외 20인 발의)	15
29.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
30.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
31.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전갑길·김희선·최용규·이희규·정철기·강현욱·이인제·김옥두·박상규·원유철·김윤식·조재환·박상희·유재건·이훈평·서정화·박양수·설훈·김학원·심재권·윤철상·고진부·정대철 의원 발의)	16
32.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박종희·강삼재·곽치영·권기술·김근태·김문수·김부겸·김원웅·김충조·김학송·김홍신·김희선·남경필·박양수·배기운·송훈석·신영국·신현태·심규섭·심재권·안상수·안영근·오세훈·유재규·윤경식·윤두환·윤한도·이상득·이성현·이원창·이인기·이재창·정문화·정병국·최병국·황우여·현경대 의원 발의)	16

33.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정철기 의원 대표발의)(정철기·고진부·김경천·김충조·김태홍·김화중·박주선·박희태·설훈·송석찬·원철희·이낙연·이정일·임채정·전갑길·조배숙·조성준·천용택·천정배·최선영·한화갑 의원 발의)	18
35.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철기 의원 대표발의)(정철기·고진부·김경재·김경천·김영진·김충조·김태홍·김화중·김효석·박주선·배기운·설훈·이낙연·이재정·이정일·전갑길·정동채·조성준·조재환·최선영·한화갑 의원 발의)	18
36. 畜産法中改正法律案(박재욱 의원 대표발의)(박재욱·정철기·원철희·고진부·최선영·정장선·이방호·강성구·이양희·박헌기·이원형·박희태·주진우·정창화·김광원·이상득·이인기·임인배·양정규·권기술·강신성일 의원 발의)	19
37.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9
38.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고진부·김영진·김윤식·김택기·문석호·박인상·박재욱·원유철·원철희·이강래·이양희·이완구·이재정·장성원·정철기·조재환·최선영·최영희·최재승·추미애·함승희 의원 발의)	19
39.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강성구·고진부·권기술·김영진·김원웅·김택기·문석호·박인상·박희태·양정규·이양희·이우재·이정일·이훈평·장성원·정철기·주진우·최선영·허태열 의원 발의)	19
40. 山林組合法中改正法律案(강성구 의원 대표발의)(강성구·박재욱·고진부·권기술·김광원·김성조·김영진·김용학·김찬우·남궁석·문석호·문희상·박희태·신경식·양정규·원철희·윤한도·이미경·이상배·이인기·이정일·이한동·임인배·장성원·정장선·정창화·정철기·주진우·최선영 의원 발의)	20
42. 農地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43. 農藥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44. 開港秩序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45. 海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46. 海上交通安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47.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박인상 의원 대표발의)(박인상·김락기·김무성·김문수·김성조·박양수·신계륜·이호웅·최명현·김성순·김태홍·김택기·김효석·문희상·박용호·박혁규·배기운·신기남·유용태·이부영·이재선·이정일·장영달·조성준·조한천·천정배·최선영·최영희·황승민 의원 발의)	22
48. 騒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3
49.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23
50.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23
51.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52.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4
53.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4

(14시26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李揆澤 의원 등 142인으로부터 국가정보원도청관련 의혹확인및검증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법률안 64건, 동의안 7건,

결의안 5건 등 총 76건이나 됩니다. 그동안 공청회와 소위원회 등 심도 있는 안전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상정된 모든 안전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 한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31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宋榮珍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會運營委員長代理 宋榮珍 국회운영위원회의 宋榮珍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선거제도, 정치자금 운용, 국회법 관련 사항 등 정치 관련 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 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국회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에 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 대비 대책을 강구하며, 그동안 유지되

어 온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30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IOC로부터 강원도 평창이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고 이를 위해 국회도 지난 8월 22일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경우 이는 남북 간 평화통일의 직·간접적인 여건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며 2003년 7월 초에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최종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활동기한을 2003년 7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상 3건의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적해 있는 정치개혁 안전을 조속히 심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 刑의失効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시3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4항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咸承熙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1월 6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수정의결하였는바 먼저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며, 둘째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셋째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3조의2에서는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여권을 제공받는 여행사 직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발생하게 되므로 여권 제공 등의 금지는 취업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1월 6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수정의결하였는바 먼저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자료표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수사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감명령의 집행 등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나열하도록 하고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전과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며, 다음으로 동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제1항제6호에서는 범죄경력 조회 또는 수사경력 조회 사유의 하나로 행정기관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무수행 외에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刑의失効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의실효등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7. 家庭暴力犯罪의處罰等에關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시4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6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關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의 金容鈞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金容鈞 법제사법위원회의 金容鈞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關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2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1월 6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보증을 알선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범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하도록 하고, 둘째 특정재산범죄 관련 범법자가 관련 기업체 및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 법에서 취업제한규정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법관리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인 경제사범에 대하여 취업을 승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경제사법관리위원회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을 만든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가중처벌되는 경제범죄를 범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아직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제사범에 대한 명단작성 및 관련 금융기관에의 배부 등을 통하여 취업제한제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현행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경제사법관리위원회 규정도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關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본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1월 6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때에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처분의 변경·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외에 보육시설의 종사자도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또는 전학 등의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지 못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 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무위원장 제출)

9.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임태희·김정숙·박세환·안택수·윤영탁·김영선·오세훈·이승철·심재철·윤한도·김문수·김만제·엄호성·임진출·전용원·정형근·김부겸·김덕룡·박주천·이병석 의원 발의)

10.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4시4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8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金富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委員長代理 金富謙 정무위원회 金富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 설명과 본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국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연구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학제 간 신생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연구현장에서 저비용으로 양성하고자 22개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대학원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법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은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적합형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고, 연구기관에 인력양성 등 교육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 연구가 융합된 시너지 효과의 기대는 물론 출연연구기관의 침체된 연구 분위기 개선 및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국운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차대한 당면 과제로서 이에 대한 유효한 대책의 일환으로 10여년간 과기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금번 대학원대학의 설립방안을 면밀히 검토·조정하여 이번 동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의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안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엽제 관련 역학조사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엽제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2003년부터 발생하는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에 대한 등록 및

지원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엽제 관련 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 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법률안의 유효기간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현역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대부분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군인보험제도를 2003년부터 폐지하되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대부분은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군인보험제도가 가입대상자들의 가입의 강제성과 보험의 보장성 미흡으로 가입자들이 동 제도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까지 강제로 저축성 위주의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수요자인 군인들의 보장성 기능 확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보험상품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政府出捐研究機關等の設立·운영및육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정무위원장)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나오연 의원 대표 발의)(나오연·김동욱·박종근·서정화·손학규·안택수·이상득·이한구·임태희·정의화·최돈웅·홍준표 의원 발의)

(14시5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1항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羅午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 羅午淵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羅午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조달의 주요수단으로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세무조사권이 자의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던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으로 인해서 여야간에 극심한 정쟁이 야기되고 국론이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세무조사마저도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비롯한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선정기준,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세무조사의 오·남용을 근절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나아가서 세무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하되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다른 목적 등으로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세무조사 대상이 법률과 시행령에

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한, 금지금이라는 것은 일반에서 말하는 금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둘째 수도권 경제력 집중 효과가 적고 외부효과가 큰 환경보전시설을 수도권내 세액공제허용대상에 추가하며, 셋째 과표양성화 효과가 지대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넷째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여섯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보화 및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일곱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장 및 기업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시한 연장과 감면요건 완화 등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있어서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金孝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45평 이상의 면적과 6억 원 이상 가액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고급주택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6억 원 이상의 가액기준에 의한 고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고가주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지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는 일정 면적기준 미만, 즉 45평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아닌 선의의 주택보유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셋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중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 등의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폐지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섯째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및 보험료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은, 첫째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둘째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전압류금전 등의 납기내 충당허용 등 공매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은, 첫째 특수관계회사를 이용한 상장 시세차익과 합병 시세차익 등을 증여로 의제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둘째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첫째 국제적 조세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개선하며, 셋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소자본세제 및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은 첫째 자국에 대한 한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한 중국의 WTO 가입 조건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하여 긴급관세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속칭 보따리상 등의 휴대품 과다반입에 대한 통관상 규제를 강화하며, 셋째 전자관세행정제도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

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재정경제위원장)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相續稅 및 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際租稅調整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관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鄭 의원, 일괄해서 6건이나 보고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징수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정부 제출)

19. 金融機關不實資產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產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0.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국고금관리법안(정부 제출)

22.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3.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5시08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8항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국고금관리법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金孝錫 재정경제위원회 金孝錫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 손실액 중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기 위하여 국채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금의 부채 상황 등을 위하여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매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민경제적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금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공적자금을 차질 없이 상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차기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정

경제부장관은 재계산에 따른 결과와 그 조치예정 사항 그리고 공적자금의 상환내역과 상환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이 2002년 11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02년 11월 22일로 완료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을 2007년 11월 22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설치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은 만기도래하는 예보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기금의 명칭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최소비용의 원칙을 벗어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 등의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당초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에서 재적위원 3분의 2로 강화하였으며, 셋째 예금보험기금이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분리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보험료 수입으로 예금대지급 등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요구권과 자료조사권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넷째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보험료 부과는 3년간 유예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2년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고금관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뿐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까지 국고금으로 포괄함으로써 국가재정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와 지출과정에 계좌이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실시간 관리기반을 조성하려

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업예산회계법상의 ‘조체수불’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절차를 일원화하고, ‘조체수불’이라는 용어를 ‘선사용자금’으로 바꾸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셋째 국고금출납사무를 수행하는 금고은행은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그 동안 연초경작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해온 현행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인삼공사가 연초경작자에게 양자 간의 협약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보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되,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100억 원이 달성될 때까지 그 시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기금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국민투자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미환급 저축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 심사보고서
金融機關不實資産等の 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고금관리법안 심사보고서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고금관리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국방위원장 제출)

25.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6.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7. 兵役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17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代理 朴洋洙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법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법안의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개정의 근본취지가 동일함으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적 연금 개정 관련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현행 군인연금법은 연금액의 조정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여서 조정 시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해서 연금수급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는 현재 2년의 임기로 영관급장교 이상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지금까지는 그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 진급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재보직 또는 전직되고 그 보직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보직 또는 전직되도록 하고 그 보직기간을 국방부장관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군무원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조달 및 정보수집·분석 분야 등의 직위에 대해서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기술자격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민간 인력을 공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률안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의 부과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반송된 통지서 등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자 등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의 전시 특례규정을 정비하는 등 병무행정의 독자수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조정 또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병역기피자 등에 대한 예외적인 국외여행 허가사유 및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과 개정안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 (국방위원장)
-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방위원회)
-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朴洋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沈在哲 議員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나오셔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在哲 議員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별도로 개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나중에 표결로 결정해야 될 텐데, 뒤에 표결을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송영진 의원 외 20인 발의)

29.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2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8항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李秉錫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李秉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삭제하여 당연직 퇴직사유에서 제외토록 하기 위하여 宋榮珍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토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중 해당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2년 1월 19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지방공무원 관련내용을 수용·반영하기 위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개념조정 및 확대적용, 외국인의 공무원임용 근거규정 및 민간기관에 임시고용 시 휴직근거 신설, 육아휴직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이 개정안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법의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02년 8월 29일 위헌결정되어 실효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과세불복 시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이 개정안 중 한국무역협회의 지방세 감면규정 및 사치성 재산의 감면제외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李秉錫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전갑길·김희선·최용규·이희규·정철기·강현욱·이인제·김옥두·박상규·원유철·김윤식·조재환·박상희·유재건·이훈평·서정화·박양수·설훈·김학원·심재권·윤철상·고진부·정대철 의원 발의)

32.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박종희·강삼재·곽치영·권기술·김근태·김문수·김부겸·김원웅·김충조·김학송·김홍신·김희선·남경필·박양수·배기운·송훈석·신영국·신현대·심규섭·심재권·안상수·안영근·오세훈·유재규·윤경식·윤두환·윤한도·이상득·이성현·이원창·이인기·이재창·정문화·정병국·최병국·황우여·현경대 의원 발의)

33.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1항 경비업법중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柳在珪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柳在珪 의원입니다.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全甲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는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경비업자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경비업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의 해당조항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아 이미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위헌판결이 난 사안에 대한 법 정비의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등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朴鍾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옆좌석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승차자가 이를 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승차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되, 운전자가 옆좌석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운전자를 면책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 중 자동차의 옆좌석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벌

점이 부과될 수 있는 행정형벌인 범칙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무 해태라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도록 수정하였고, 그리고 옆좌석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안 맨 경우에 운전자에 대한 책임완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차자에게 승차자의 주취·질병 등의 사유로 좌석안전띠를 매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옆좌석 승차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문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금번에는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자문서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절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 중, 첫째 전자문서에 의한 문서의 송달은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수정하여 전자정부법 등 유사 입법례와 통일을 기하였고, 둘째 개정안에서는 청문주재자가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검토 또는 협조한 경우에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청문주재자가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우에만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청문조서에서 분리되는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柳在珪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정철기 의원 대표발의)(정철기·고진부·김경천·김충조·김태홍·김화중·박주선·박희태·설훈·송석찬·원철희·이낙연·이정일·임채정·전갑길·조배숙·조성준·천용택·천정배·최선영·한화갑 의원 발의)

35.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철기 의원 대표발의)

(정철기·고진부·김경재·김경천·김영진·김충조·김태홍·김화중·김효석·박주선·배기운·설훈·이낙연·이재정·이정일·전갑길·정동채·조성준·조재환·최선영·한화갑 의원 발의)

(15시3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4항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哲基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鄭哲基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鄭哲基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과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

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관한 정의규정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朴寬用 의장, 金台植 부의장과 사회고대)

다음,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 농어촌휴양관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인 정비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이 환지계획의 인가권을 가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鄭哲基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畜産法中改正法律案(박재욱 의원 대표발의)

(박재욱·정철기·원철희·고진부·최선영·정장선·이방호·강성구·이양희·박헌기·이원형·박희태·주진우·정창화·김광원·이상득·이인기·임인배·양정규·권기술·강신성일 의원 발의)

37.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39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박在旭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朴在旭**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박在旭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농가의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폐지하며,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만약 대기업이 축산업에 참여할 경우 축산농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농산물의 등급판정,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한 업무로 수

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畜産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가축전염병예방방법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정장선·고진부·김영진·김윤식·김택기·문석호·박인상·박재욱·원유철·원철희·이강래·이양희·이완구·이재정·장성원·정철기·조재환·최선영·최영희·최재승·추미애·함승희 의원 발의)

39.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정장선·강성구·고진부·권기술·김영진·김원웅·김택기·문석호·박인상·박희태·양정규·이양희·이우재·이정일·이훈평·장성원·정철기·주진우·최선영·허태열 의원 발의)

(15시44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가축전염병예방방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鄭長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長善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과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최근의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와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업무대행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만 가축방역관에 임명토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산지목재비축제도를 도입하여 산주가 원하는 경우 벌채기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를 일정 기간 유보하고 벌채 유보에 따른 산주 손실 예상액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산림을 장기·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山林組合法中改正法律案(강성구 의원 대표 발의)(강성구·박재욱·고진부·권기술·김광원·김성조·김영진·김용학·김찬우·남궁석·문석호·문희상·박희태·신경식·양정규·원철희·윤한도·이미경·이상배·이인기·이정일·이한동·임인배·장성원·정장선·정창화·정철기·주진우·최선영 의원 발의)

(15시47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40항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姜成求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姜成求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조합과 중앙회가 직접 경합되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위축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조합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 등 현행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 선출할 경우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의 상임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집행간부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했습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山林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
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산지관리법안을 상정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분들 간
의 합의에 따라서 동 안건의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農地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3. 農藥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50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42항 농지법중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2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仁基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한나라당 李仁基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지법중개정
법률안과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일반
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진흥지
역 밖에서도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등록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심각
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외국의 위해농약으로부터 사람·가축 및 환
경을 보호하기 위한 로테르담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
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農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藥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開港秩序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5. 海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6. 海上交通安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53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44항 개항질서법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해운법중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46항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
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3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方鎬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한나라당 경남 사천 출신 李方鎬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항질서법중개정법률안, 해운법중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항질서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20t 이상의 선박을 용접 등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현행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실 연료탱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내 위험 구역에서의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허가받도록 하되, 선박 갑판 등 위험구역 밖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로 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개정안의 범문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선박의 정박 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과 항로지정을 개정안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시로 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항만준설이나 항만 내 선석(船席)이 증대됨에 따라 선박의 정박구역 및 항로를 적시성 있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첫째 빈 컨테이너 및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국내항 사이에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도 별도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자는 외국의 선박관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매우 많은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현행의 선박관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입법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첫째 국제안전관리규약 및 국제 해상충돌예방규칙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고, 둘째 그동안 선박 출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동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셋째 내항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이 법상의 안전관리체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기존의 해운법상의 운항관리자 제도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심사결과 입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開港秩序法中改正法律案法律案 審査報告書
海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海上交通安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항질서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박인상 의원 대표발의)(박인상·김락기·김무성·김문수·김성조·박양수·신계륜·이호웅·최명현·김성준·김태홍·김택기·김효석·문희상·박용호·박혁규·배기운·신기남·유용태·이부영·이재선·이정일·장영달·조성준·조한천·천정배·최선영·최영희·황승민 의원 발의)

- 48. 騒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49.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 50.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15시57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47항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朴仁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朴仁相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요소 중 지역계수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바다와 바닷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매립·간척사업 등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은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동 법률안의 취지에 환경노동위원회는 234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적극 찬성하고, 1차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받아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하되 바다와 바닷가 중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생물 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일반적인 바다 및 바닷가와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소음·진동 실태를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업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동 법률안의 취지에 환경노동위원회는 234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적극 찬성하고,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받아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소음·진동실태를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측정한 소음·진동실태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1차 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20일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의 유입기준을 설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둘째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34

회국회 11차 위원회에서 2000년 11월 24일 朴炳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 12월 18일 金元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1월 12일 朴洋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18일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엔진가동에 의한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騒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환경노동위원회)
- 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 처리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환경노동위원장)
-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환

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1.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52.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3.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6시05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51항 습지보전법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수질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朴赫圭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빨리 읽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습지보전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27회국회(임시회) 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제234회국회(정기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규제행위를 강화하고, 습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제도를 신설하며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 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이들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정기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 11월 24일 朴炳濶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9월 3일 朴赫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12월 28일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그 시행규칙에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이 너무 경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형편인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사용 금지규정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국토의 환경보호를 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

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1월 25일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초를 전환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자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자원 및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 계획에 자연환경보전·국토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 등 환경 제 분야를 포함하도록 하여 동 계획이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수준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 수단 등을 보완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국무총리 소속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환경보

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범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환경노동위원회)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朴赫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朴赫圭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결정족수 충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채우면 되니까 심사보고만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의 입장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나가는 것도 가급적이면 삼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가결도 함께 해 나가면서 의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 의원님들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대로 하고 제안설명은 제안설명대로 진행하면서 의결정족수만 충족되면 처리할까 그랬습니다마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께서도 그것이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 10분 이상 더 기다려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오늘 회의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기다려 보아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총무 간에 새로운 협의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참 조)

【결의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2. 11.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선거제도, 정치자금 운용, 국회법 관련사항 등 정치 관련 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2. 11.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문제에 관한 여론수렴 및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거시적·종합적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 (2) 통일헌법 등 통일대비 법제화에 관한 사항
- (3) 통일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4)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사항
- (5) 남북간 주요회담에 관한 사항
- (6) 남북 간 교류·협력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에 관한 사항
- (7) 기타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위원 수는 3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국민적 노력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에 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통일 대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2. 11.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 스포츠 대제전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됨.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2년 8월 28일 IOC로부터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음.

특히,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통일의 직·간접적인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어 IOC가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出席議員(222人)

姜 三 載	姜 成 求	姜 淑 子	姜 申 星 一
姜 雲 太	姜 仁 燮	姜 在 涉	高 珍 富
高 興 吉	郭 治 榮	權 琪 述	權 寧 世
權 五 乙	權 哲 賢	權 泰 望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金 槿 泰	金 杞 培
金 杞 載	金 淇 春	金 德 圭	金 德 龍
金 德 培	金 明 燮	金 武 星	金 文 洙
金 芳 林	金 秉 浩	金 富 謙	金 相 賢
金 聖 順	金 成 鎬	金 映 宣	金 榮 駟
金 泳 鎭	金 榮 春	金 榮 煥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金 雲 龍	金 元 雄	金 政 夫	金 貞 淑
金 鍾 河	金 宗 鎬	金 鎭 載	金 燦 于
金 忠 兆	金 台 植	金 泰 弘	金 鶴 松
金 學 元	金 炯 昨	金 洪 信	金 花 中
金 晃 植	金 孝 錫	羅 午 淵	南 景 弼
都 鍾 伊	柳 在 乾	柳 在 珪	陸 堯 相
文 喜 相	閔 鳳 基	朴 寬 用	朴 槿 惠
朴 明 煥	朴 炳 錫	朴 炳 潤	朴 相 千
朴 相 熙	朴 世 煥	朴 承 國	朴 是 均
朴 洋 洙	朴 源 弘	朴 仁 相	朴 在 旭
朴 鍾 根	朴 宗 雨	朴 鍾 雄	朴 鍾 熙
朴 柱 千	朴 振	朴 昌 達	朴 憲 基
朴 赫 圭	朴 燾 太	裴 基 善	裴 奇 雲
白 承 弘	徐 秉 洙	徐 相 燮	徐 廷 和

俣松雄 薛勳 孫希 妊 宋光 浩
 宋永吉 宋榮珍 宋勳錫 宋辛 光
 申榮國 申榮均 申鉉泰 沈揆 卿植
 沈載權 沈在哲 安安 安梁 元裕 正圭
 安商守 安泳根 安吳長 元裕 正圭
 嚴虎聲 吳世勳 吳長 元裕 正圭
 元喆喜 元喜龍 劉容泰 尹景 湜相
 尹斗煥 尹汝雋 尹榮卓 尹鐵 鐵相
 尹漢道 李康斗 李康來 李敬 在卿
 李揆澤 李根鎮 李萬燮 李美 美卿
 李方鎬 李秉錫 李富榮 李相 得九
 李相培 李良熙 李熾淑 李完 炯九
 李龍三 李佑宰 李元昌 李源 仁濟
 李允盛 李允洙 李仁基 李仁 濟昌
 李在善 李在五 李在漢 李在 海龜
 李正一 李昌馥 李浩雄 李訓 平熙
 李海鳳 李仁培 林鎮出 任太 熙吉
 李熙圭 張永達 張泰玩 全甲 哲九
 張誠源 張全在 鄭均桓 鄭範 九和
 田塔源 鄭東采 鄭文和 鄭義 和基
 鄭東泳 鄭東均 鄭宇澤 鄭哲 奎宅
 鄭柄國 丁世均 鄭昌和 曹雄 奎宅
 鄭長善 鄭鎮碩 趙舜衡 曹容 宅國
 鄭亨根 趙富英 趙鎮旰 崔炳 圭宰
 曹正茂 趙漢天 崔明憲 崔龍 圭宰
 千正培 崔燉熙 崔榮洙 咸錫 宰大
 崔秉烈 崔鉛熙 韓昇洙 玄敬 大杓
 崔在昇 秋美愛 許雲那 許泰 烈馨
 咸承熙 洪思德 洪在 馨
 玄勝一 洪祐呂
 黃勝敏 黃祐呂

○出張議員(5人)

金東旭 李性憲 李承哲 李鍾杰 趙培淑

○請暇議員(26人)

康奉均 姜昌成 姜昌熙 金樂冀
 金允式 金一潤 金鍾泌 金宅起
 金弘一 南宮哲 柳興洙 孟亨奎
 文錫鎬 朴尙奎 朴柱宣 安大崙
 李祥義 李源性 李柱榮 李漢東
 李海瓚 田溶鶴 趙誠俊 趙在煥
 曹喜旭 河舜鳳

○出席國務委員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田允喆

외교통상부장관 崔成泓
 국방부장관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李根植
 농림부장관 李金東
 환경부장관 李金明
 노동부장관 方鏞錫
 여성부장관 韓明淑
 건설교통부장관 林寅昊
 해양수산부장관 金昊植

○出席政府委員

법무부차관 金珪 珪 泳孝
 국방부차관 權永 永 鍾成
 국가보훈처차장 金鍾成

【報告事項】

○常任委員選任

政治改革特別委員會

한나라당

姜在涉 許泰烈 金容鈞
 金龍學 沈揆喆 安商守
 李敬在 李秉錫 林仁培
 全在姬

새천년민주당

千正培 金權泰 金宅起
 朴柱宣 薛勳 宋永吉
 李康來 李鍾杰 全甲吉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
 金學元

(11월7일자)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國會運營	李熙圭	鄭範九	새천년민주당

(11월4일자)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豫算決算特別	劉容泰	朴炳錫	새천년민주당

(10월31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豫算決算特別	李柱榮	朴赫圭	한나라당

(11월4일자)

○議案提出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전감길 의원 대표발의)

(10월30일 전갑길·김상현·임종석·정동채·박주선·최선영·조성준·정철기·한화갑·이창복·박종희·김영진·원유철·김희선·김영환·김태홍·이낙연·김운용·김방림·김경천·최용규·김옥두·박상규 의원 발의)

10월31일 國會運營委員會에 회부

공적자금의 조성·운영·지원·회수등일련의과정에서일어난비리의혹진상조사를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10월31일 박종근 의원 외 141인 발의)

10월31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國會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10월31일 심재철·안경률·민봉기·현승일·권기술·이재오·강신성일·황우여·이원형·권태망·서정화·안택수·김영춘·김영선·정의화·이우재·정문화·박시균·김홍신·김찬우·강창성·이연숙·전재희·이규택·강재섭 의원 발의)

11월1일 國會運營委員會에 회부

금융감독원법안(서상섭 의원 대표발의)

(10월31일 서상섭·안택수·임종석·이부영·황우여·박주천·이호웅·박명환·김원웅·심재권·안동선·김황식·김학송·김홍신·이경재·원희룡·원철희·김동욱·김희선·박인상·김영춘·박승국·민봉기·이성현 의원 발의)

11월1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中小企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유용태 의원 대표발의)

(10월31일 유용태·박시균·김상현·송광호·안동선·원철희·안택수·이협·김일윤·이훈평·배기운·이강래·문희상·조성준·김성호·홍사덕·김락기·김명섭·김효석·박양수·설송웅 의원 발의)

11월1일 産業資源委員會에 회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증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11월1일 신기남·김경재·김근태·김성호·김원기·김태홍·김홍신·김희선·심재권·유재건·이강래·이미경·이종걸·이호웅·임종석·정동채·정범구·최용규·천정배·추미애 의원 발의)

11월2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11월1일 신계륜·김덕규·조배숙·천용택·김태홍·김원기·이강래·최용규·전갑길·한화갑·김영진·최재승·이부영·김영배·정세균·오세훈·김근태·김황식·김영환·이창복·김경천·이승철

·서상섭·박인상·송훈석·서병수·전재희·박상희·박원홍·추미애·김희선·김충조·박혁규 의원 외 2인 발의)

11월2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1일 이호웅·서상섭·박명환·설송웅·정세균·송광호·임종석·조한천·박양수·안영근·이부영·송영길·이미경·신기남·김문수·김태홍·심재권·이강래·박인상·김부겸·박상희·김명섭·유용태·권기술·이재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월2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현경대 의원 대표발의)

(11월2일 현경대·정동채·박명환·최용규·서정원·윤경식·고홍길·이원형·신영균·권기술·오세훈·김용학·김부겸·이해구·안택수·심재권·정병국·강신성일·이근진·남경필·이경재·김태홍·민봉기·김근태·엄호성·윤한도·안상수 의원 발의)

11월2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11월4일 김홍신·송영길·김명섭·박인상·이호웅·이연숙·신기남·조배숙·정범구·이우재·김부겸·김성순·김원웅·심재권·권기술·윤여준·서상섭·원희룡·임종석·김상현 의원 발의)

11월5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

(11월4일 이강래·이낙연·이종걸·장재식·정동영·함승희·정동채·신기남·문희상·김효석·배기운·김태홍·이호웅·설송웅·김원웅·김영환·임종석·정세균·송영길·김성호·원유철·천정배·신계륜 의원 발의)

11월5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

(11월5일 女性委員長 제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 11월5일 國會運營委員長 제출)

消防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엄호성·강재섭·권태망·김동욱·김무성·김문수·김진재·김홍신·김황식·박명환·박주천·신영균·서상섭·이성현·유홍수·정의화·주진우·현경대·황우여·정창화 의원 발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11월5일 정범구 의원 외 22인 발의)

이상 2건 11월6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한인의미국이민 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

(11월5일 統一外交通商委員長 제출)

의료기기법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원형·김명섭·박세환·김광원·김동욱·전용원·하순봉·최연희·백승홍·최병렬·김성순·김상현·이원성·김찬우·박창달·김학송·박승국·윤경식·김부겸·이상득·박명환·엄호성·남경필·김홍신·김용학·윤영탁·안택수·이인기·김만제·임인배·윤두환·조응규·김황식·김영춘 의원 발의)

11월6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정일·김상현·김영배·송석찬·김원길·강숙자·김영진·박명환·조배숙·정세균·김부겸·강운태·이원성·홍재형·김문수·오세훈·박인상·정동채·전재희·박양수·김원기·김운용·정대철·안동선·이강래·김홍일·김성순·김화중·김락기·박주선·김충조·김덕규·이승철 의원 발의)

11월6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女性發展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5일 女性委員長 제출)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보험업법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5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6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건 11월6일 財政經濟委員長 제출)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6일 國防委員長 제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代案)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7건 11월7일 環境勞動委員長 제출)

賃貸住宅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6일 建設交通委員長 제출)

○議案審査

국군부대의「유엔등티모르지원단(UNMISET)」파견 연장동의안

(10월28일 정부 제출)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파견연장동의안

(10월28일 정부 제출)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

(10월10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7일 統一外交通商委員長 보고)

2003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10월18일 정부 제출)

2003년도에만기도래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10월1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7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10월19일 정부 제출)

(11월7일 國防委員長 보고)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6일 政務委員長 제출)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

(8월12일 이성현·임태희·김정숙·박세환·안택수·윤영탁·김영선·오세훈·이승철·심재철·윤한도·김문수·김만제·엄호성·임진출·전용원·정형근·김부겸·김덕룡·박주천·이병석 의원 발의)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

(10월1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7일 政務委員長 보고)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

(10월17일 정부 제출)

(11월7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4월19일 정부 제출)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案

(6월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7일 國防委員長 보고)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2001년9월15일 전갑길·김희선·최용규·이희규

·정철기·강현욱·이인제·김옥두·박상규·원유철·김윤식·조재환·박상희·유재건·이훈평·서정화·박양수·설훈·김학원·심재권·윤철상·고진부·정대철 의원 발의)

(11월7일 行政自治委員長 보고)

海上交通安全法中改正法律案

(10월18일 정부 제출)

農藥管理法中改正法律案

(10월21일 정부 제출)

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10월16일 정장선·강성구·고진부·권기술·김영진·김원웅·김택기·문석호·박인상·박희태·양정규·이양희·이우재·이정일·이훈평·장성원·정철기·주진우·최선영·허태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7일 農林海洋水産委員長 보고)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

(2001년7월24일 정부 제출)

(11월7일 環境勞動委員長 보고)

河川法中改正法律案(강인섭 의원 대표발의)

(7월30일 강인섭·신기남·신현태·이근진·김희선·박주선·박인상·박희태·강창성·장영달·정동영·정동채·정세균·이강두·박상규·권기술·배기운·김성순·안상수·신경식 의원 발의)

骨材採取法中改正法律案

(10월2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7일 建設交通委員長 보고)

이상 19건 원안의결

국제부흥개발은행의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대한출연동의안

(9월11일 정부 제출)

(11월7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10월17일 정부 제출)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0월18일 정부 제출)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關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10월21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7일 法制司法委員長 보고)

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7월29일 정부 제출)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國際租稅調整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9월27일 정부 제출)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0월10일 정부 제출)

국고금관리법안

(5월28일 정부 제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

(10월10일 정부 제출)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9월27일 정부 제출)

관세법중개정법률안

(9월17일 정부 제출)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5월14일 정부 제출)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10월10일 정부 제출)

(이상 10건 11월7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兵役法中改正法律案

(6월11일 정부 제출)

(11월7일 國防委員長 보고)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2001년7월16일 박종희·강삼재·곽치영·권기술·김근태·김문수·김부겸·김원웅·김충조·김학송·김홍신·김희선·남경필·박양수·배기운·송훈석·신영국·신현태·심규섭·심재권·안상수·안영근·오세훈·유재규·윤경식·윤두환·윤한도·이상득·이성현·이원창·이인기·이재창·정문화·정병국·최병국·황우여·현경대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5월28일 정부 제출)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10월17일 정부 제출)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4월23일 정부 제출)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송영진 의원 발의)

(2001년2월23일 송영진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5건 11월7일 行政自治委員長 보고)

開港秩序法中改正法律案

(7월13일 정부 제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關한법률안(정철기 의원 대표발의)

(10월11일 정철기·고진부·김경천·김충조·김태홍·김화중·박주선·박희태·설훈·송석찬·원철희·이낙연·이정일·임채정·전갑길·조배숙·조성준·천용택·천정배·최선영·한화갑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안

(4월20일 정부 제출)

가축전염병예방방법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10월15일 정장선·고진부·김영진·김윤식·김택기·문석호·박인상·박재욱·원유철·원철희·이강래·이양희·이완구·이재정·장성원·정철기·조재환·최선영·최영희·최재승·추미애·함승희 의원 발의)

畜産法中改正法律案(박재욱 의원 대표발의)

(10월19일 박재욱·정철기·원철희·고진부·최선영·정장선·이방호·강성구·이양희·박헌기·이원형·박희태·주진우·정창화·김광원·이상득·이인기·임인배·양정규·권기술·강신성일 의원 발의)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

(10월21일 정부 제출)

山林組合法中改正法律案(강성구 의원 대표발의)

(10월17일 강성구·박재욱·고진부·권기술·김광원·김성조·김영진·김용학·김찬우·남궁석·문석호·문희상·박희태·신경식·양정규·원철희·윤한도·이미경·이상배·이인기·이정일·이한동·임인배·장성원·정장선·정창화·정철기·주진우·최선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7일 農林海洋水産委員長 보고)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

(3월30일 정부 제출)

自然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박인상 의원 대표발의)

(2월7일 박인상·김락기·김무성·김문수·김성조·박양수·신계륜·이호웅·최명현·김성순·김태홍·김택기·김효석·문희상·박용호·박혁규·배기운·신기남·유용태·이부영·이재선·이정일·장영달·조성준·조한천·천정배·최선영·최영희·황승민 의원 발의)

騒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

(2001년11월12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7일 環境勞動委員長 보고)

都市開發法中改正法律案(설송웅 의원 대표발의)

(11월9일 설송웅·심규섭·김민석·김윤식·이희규·이강래·정동영·송훈석·박용호·조한천·고진부·김덕배·박주선·유재규·장태완·장재식·이인제·김홍일·설훈·송영진·김화중·이근진·안동선·유용태·이재창·백승홍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

의)

(10월14일 안상수·신현태·정병국·오세훈·김형오·이주영·장성원·조정무·황우여·이해봉·박종근·김학송·안경률·김병호·도종이·윤두환·현승일·정의화·이한구·이승철·이원형·박혁규·안영근 의원 발의)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홍일 의원 발의)

(2001년11월29일 김홍일 의원 외 25인 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9월18일 정부 제출)

法律第3782號河川法中改正法律附則第2條의規定에 의한補償請求權의消滅時效가만료된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강인섭 의원 대표발의)

(7월30일 강인섭·신기남·신현태·이근진·김희선·박주선·박인상·박희태·강창성·장영달·정동영·정동채·정세균·이강두·박상규·권기술·배기운·김성순·안상수·신경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7일 建設交通委員長 보고)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中改正法律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1년12월31일 이미경·정철기·임채정·송훈석·이재정·박양수·정범구·이창복·김정숙·권철현·정병국·전갑길·이종걸·허운나·장영달·김태홍·김희선·김화중·정세균·임종석·김경천·송석찬·이호웅·조배숙·강신성일·김영진·김원웅·배기운·이연숙 의원 발의)

(11월7일 女性委員長 보고)

이상 37건 수정의결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代案)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건 11월6일 財政經濟委員長 제출)

(이상 2건 11월7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6일 國防委員長 제출)

(11월7일 國防委員長 보고)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大氣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代案)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7건 11월7일 環境勞動委員長 제출)
(이상 7건 11월7일 環境勞動委員長 보고)

賃貸住宅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6일 建設交通委員長 제출)
(11월7일 建設交通委員長 보고)

女性發展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5일 女性委員長 제출)
(11월7일 女性委員長 보고)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호일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19일 김호일·강삼재·강인섭·고홍길·김동욱·김명섭·김성순·김용갑·고진부·김희선·박광태·박양수·박종근·박종웅·배기운·서정화·손학규·신영국·안영근·안택수·유재규·윤경식·윤두환·윤여준·이근진·이미경·이완구·이인기·이주영·이창복·임인배·맹형규·정병국·조성준·주진우·최병국·하순봉·황승민 의원 발의)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5월14일 정부 제출)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조희욱 의원 대표발의)

(7월23일 조희욱·정진석·이양희·정문화·민봉기·송광호·이재선·원철희·김만제·정형근·허태열·임진출·함석재·김택기·송훈석·김윤식·김태홍·고진부·최영희·박명환·오세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7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請願提出

농어촌복지에관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2002년11월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2층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홍수 외 77,325인으로부터 金泳鎭 의원·朴燾太 의원·元喆禧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

11월4일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

전남해남해군기지건설반대에관한청원

(2002년11월1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423 박종기 외 6인으로부터 李正一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일 國防委員會에 회부

지방세법개정에관한청원

(2002년11월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1

-8 현대넥서스빌라 C동 202호 이재창 외 4인으로부터 玄敬大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11월5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2002년11월6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성유보로부터 金泰弘 의원의 소개로 제출)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하겠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2년11월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생명윤리법제정공동캠페인단 김환석으로부터 金洪信 의원의 소개로 제출)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하겠음

○要求書提出

국가정보원도청관련의혹확인및검증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10월31일 이규택 의원 등 142인 제출)

○書面質問書提出

대한생명매각,한화그룹에관한질문서(2건)

(11월1일 鄭宇澤 의원 제출)

11월2일 정부에 이송

의원급의료기관에대한소득세부과에관한질문서

(11월4일 金洪信 의원 제출)

11월4일 정부에 이송

건축법시행령및식품위생법시행령에관한질문서(2건)

(11월5일 李柱榮 의원 제출)

11월6일 정부에 이송

○書面答辯書提出

현행국사교과서역사날조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0월31일 정부 제출)

광양항경제특구지정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LNG저장터미널및LNG화력발전소건설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2건)

문화관광부국고보조금반납금및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재정자립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4건 11월4일 정부 제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초청사업부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1월5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2001년도국정감사결과처리보고서

(11월4일 행정자치부 제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록으로 보존함)